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탁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67호, 2020. 12. 8. 공포, 2022. 12. 9. 시행)됨에 따라 형사 공탁에 있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(안 제81조 신설)

○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,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,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를 명확히 규정함

나.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(안 제82조 신설)

○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, 조 서, 진술서,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(성·가명 포함)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·사건번호·사건명, 해당 검찰 청·사건번호로 규정함

- 다.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(안 제83조 신설)
 -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
- 라.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(안 제84조 신설)
 - 공고 장소와 시기,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- 마.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관련 규정 신설(안 제85조 신설)
 -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 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
- 바.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(안 제86조 신설)
 -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 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 정함
- 사.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

근거 신설(안 제87조 신설)

-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 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·증명하도록 규정함
- 아.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(안 제88조 및 제89조 신설)
 -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,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
- 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ㆍ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(제81조부터 제89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

제81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형사공탁"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.
- 2. "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"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・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·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.
- 3. 법 제5조의2제2항의 "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"이란 공소장, 조서, 진술서,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(성·가명을 포함한다) 을 말한다.
- 4. "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"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 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

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

- 5. "비실명 처리"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82조(공탁서 기재의 특칙)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 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, 조서, 진술서,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(성·가명을 포함한다)만 기재하고, 피 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,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.
- 제83조(첨부서면의 특칙)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
 - 2.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·진 술서·판결서 사본
 - 3.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
- 제84조(형사공탁의 공고)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 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

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법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. 다만, 성(姓)을 제외한 이름은 비 실명 처리하고, 성(姓)의 공고방법은 대법원예규에 따른다.
- 2.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 건번호
- 3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
- 제85조(형사공탁 사실 통지)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6조(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)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7조(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) 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

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(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)를 제출 한 사람이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열람하 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88조(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)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, 검 찰은 군검찰로 본다.
- 제89조(대법원예규에의 위임)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
<u><신 설></u>	제81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
	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
	<u>같다.</u>
	<u>1. "형사공탁"이란 법 제5조의2</u>
	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
	<u>을 말한다.</u>
	2. "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
	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
	할 수 있는 서면"이란 피해자
	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
	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
	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
	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・
	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
	항에 대한 열람・복사를 할
	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
	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
	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
	한다.
	3. 법 제5조의2제2항의 "피해자 로 트저하 스 이노 며친"이라
	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"이란
	공소장, 조서, 진술서, 판결서
	<u>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(성·</u>

가명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 4. "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서"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 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
- 5. "비실명 처리"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82조(공탁서 기재의 특칙) ①
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
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
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
장, 조서, 진술서, 판결서에 기
재된 피해자의 성명(성·가명을
포함한다)만 기재하고, 피공탁
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
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, 공 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 호를 기재한다.

- 제83조(첨부서면의 특칙) 공탁서 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
 - 2.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 <u>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</u> 조서·진술서·판결서 사본
 - 3.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 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
- 제84조(형사공탁의 공고) ① 피공 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 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 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1.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

 성명. 다만, 성(姓)을 제외한

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고, 성

 (姓)의 공고방법은 대법원예

 규에 따른다.
- 2.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해당 검 찰청과 사건번호
- 3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

제85조(형사공탁 사실 통지) 공탁 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 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 송반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 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 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 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.

제86조(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)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

<신 설>

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 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 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7조(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)
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(인 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)를 제출한 사람이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
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제88조(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
	건)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
	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
	을 적용한다. 이 경우 법원은 군
	사법원으로, 검찰은 군검찰로
	<u>본다.</u>
<u><신 설></u>	제89조(대법원예규에의 위임) 형
	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
	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
	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
	<u>할 수 있다.</u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	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-7624